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59
----------	------

2022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5. 30.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2. 6. 3.
4.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17.)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이병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77억원이고, 이 중 51건, 93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908억원을 지출하였음

-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총 1,509억원이며, 이 중 42건 89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868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비 부담금 확보 172억원, 지하철 1~8호선 상가임대료 손실보전 141억원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1억원 등 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67억원을 편성하여, 9건, 40억원을 지출결정하고, 40억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비 증가분 12억원, 소방행정타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4억원 등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2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개요¹⁾

- '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조 7,591억 2,8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46조 7,985억 1,400만원) 보다 2.1%, 9,606억 1,4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46조 6,975억 2,200만원은 당초 본예산(40조 1,562억 4,100만원), 간주처리분(7,259억 1,900만원), 추경 증액조정분(5조 8,153억 6,0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1조 616억 600만원)을 합한 '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46조 7,985억 1,400만원)보다 2.1%,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9,606억 1,400만원 증가한 47조 7,591억 2,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49조 5,396억 9,800만원)보다 6.7%, 3조 3,194억 1,400만원 증가한 52조 8,59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조 1,730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13조 6,861억 1,0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44조 4,099억 5,100만원)보다 2.1%, 9,237억 4,000만원 증가한 45조 3,336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조 9,602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12조 3,734억 8,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5조 1,297억 4,600만원) 보다 2조 3,956억 7,400만원 증가한 7조 5,254억 2,100만원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1	총계	47,759,128 <2021최종> 46,697,522 <2020→2021이월> 1,061,606	52,859,112 (110.7%)	45,333,691 (94.9%)	7,525,421 (15.8%)	명 시 이 월 ^{주1)} 445,055 사 고 이 월 690,473 건설개량이월 ^{주1)} 26,074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85,365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주2)} - 순 세 계 잉 여 금 6,442,845
	일반회계	33,834,846 <2021최종> 33,482,498 <2020→2021이월> 352,348	39,173,001 (115.8%)	32,960,202 (97.4%)	6,212,799 (18.4%)	명 시 이 월 ^{주1)} 85,451 사 고 이 월 183,674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75,097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주2)} - 순 세 계 잉 여 금 5,871,201
	특별회계	13,924,281 <2021최종> 13,215,023 <2020→2021이월> 709,258	13,686,110 (98.3%)	12,373,488 (88.9%)	1,312,621 (9.4%)	명 시 이 월 ^{주1)} 359,603 사 고 이 월 506,799 건설개량이월 ^{주1)} 26,074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0,267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주2)} - 순 세 계 잉 여 금 571,643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주2)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20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에 물납 등이 추가되었음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3355 ('22. 4. 8)

(2) 예비비 결산 개요

- '21회계연도 예비비는 1,676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938억 1,4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907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계	167,693	93,814	90,771	-	3,042
일반회계	150,946	89,777	86,767	-	3,010
특별회계 ^{주1)}	16,747	4,036	4,003	-	32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3)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한 '2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조 444억 6,2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조성액(3조 5,921억 6,800만원)보다 1조 4,522억 9,400만원 증가한 것임
 - '21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조 1,904억 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조 7,381억 1,500만원임
-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4조 3,549억 8,400만원, 지출은 4조 3,573억 7,2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내용을 제출하였음

3.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년 10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1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 본예산에 1,50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1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5,600만원)과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1억 500만원)을 통해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를 1,509억 4,6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예비비 17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1억 4,500만원)과 제2회 추경(△13억 1,400만원)을 통해 167억 4,7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표 3-3〉 2021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최종예산
		제1회	제2회	
총계	168,812	89	△1,208	167,693
일반회계	150,897	△56	105	150,946
일반예비비	130,897	△56	150	130,946
목적예비비	20,000	-	-	20,000
특별회계	17,915	145	△1,314	16,74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 '21회계연도에 편성된 일반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676억 9,300만원으로 이 중 938억 1,400만원(49건)을 지출결정하여 907억 7,100만원(48건)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한 바,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는 1,509억 4,600만원중 59.5%, 897억 7,700만원(40건)을 지출결정하고, 867억 6,700만원(39건)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건, 1억 2,4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에서 2건, 15억 8,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5억 8,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 2,900만원(5건)을 지출결정하고, 20억 9,700만원(5건)을 지출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 2억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9,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 예비비 지출현황 ('21~'19)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2021	소 계	167,693	93,814	90,771	-	3,042
	일반회계	150,946	89,777	86,767	-	3,010
	특별회계	16,747	4,036	4,003	-	32
2020	소 계	161,553	126,743	125,818	48	876
	일반회계	148,037	123,891	123,065	48	776
	특별회계	13,516	2,852	2,752	0	99
2019	소 계	246,198	166,268	165,764	-	504
	일반회계	211,937	161,411	161,349	-	61
	특별회계	34,261	4,857	4,414	-	44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예비비(1,509억 4,600만원)중 40.9%, 618억 6,900만원을 코로나19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로 제출한 바,

〈표 3-5〉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중 코로나19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예비비 (A)	코로나 19 대응 관련 예비비 지출액 (B)	비 율 (B/A)
'21회계연도	150,946	61,869	40.9
'20회계연도	148,037	61,056	41.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 특히, 코로나19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일반회계 예비비(24건, 618억 6,900만원)중 9건, 351억 3,900만원이 ①자치단체경상보조금(6건, 308억 3,700만원), ②민간경상사업보조(2건, 13억 5,000만원), ③운수업계보조금(1건, 29억 5,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되나,
 - 관련 법령은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21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예비비중 보조금을 지출한 사례는 관련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다만, 긴급재해대책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보조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동 예비비 지출사례가 위법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3-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비비 지출액 (A)	예비비를 통한 보조금지출액 (B)	비 율 (B / A)
계	86,767	35,139	40.4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30,837	35.5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183	0.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7,200	8.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7,248	19.8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50	0.2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140	0.1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5,816	6.7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350	1.5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365	0.4
9호선 코로나 대응지원(일반회계)		985	1.1
운 수 업 계 보 조 금		2,952	3.4
운수사업자 인건비 지원		2,952	3.4

○ 문화본부는 '21년 12월,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등을 감면하고자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①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1억 700만원, ②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2억 2,100만원에 대해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

- 예산부서가 12월 17일, 관련 예비비를 사용승인하여 사업부서는 12월 23일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12월 30일에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도 출자·출연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20회계연도에 별도의 출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통해 출연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라도 출연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출하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음
 - '2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동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지출하고자 지난 '21년 10월, 관련 「출연 동의안」 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회의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결과로 사료됨
- 다만, 예산부서가 「출연 동의안」 이 의회에서 의결('21.12.22)되기 전인 지난 12월 17일 사용승인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7〉 문화본부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동의안 의결일	예비비 지출일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출연금	35,662	35,662	'21.12.17	'21.12.22	'21.12.23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출연금	20,975	20,975	'21.12.17	'21.12.22	'21.12.30

- 도시교통실은 **9호선 코로나 대응지원(일반회계)**에 예비비를 지출한 바, 9호선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위탁업체의 손실 비용을 보전하고자 ①민간경상사업보조 9억 8,500만원, ②민간위탁금 6,000만원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조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등의 제약이 있었던 기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요구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3-8〉 9호선 코로나 대응지원(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9호선 코로나 대응지원(일반회계)	민간경상사업보조	985	985	-
”	민간위탁금	60	60	-

-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에 일반회계 예비비 11억 6,400만원을 사용계획하여, 6억 4,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표 3-9〉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계		1,164	642	522	'21.11.12	
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1	-	421	”	-
2	사무관리비	72	71	1	”	'21.12.30
3	공공운영비	52	51	1	”	”
4	시설비	450	413	36	”	”
5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7	105	61	”	”

- 동 예비비 지출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

로나19 관련 환자를 이송하는 전담구급대를 당초 20개대에서 15개대를 추가 운영하고자 예비비중 11억 6,4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억 4,200만원을 지출한 것이나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하여 소방특별회계의 세부사업에 집행한 것으로서,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전담구조대 확대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계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지출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 절차가 지연되어 회계연도중 인력을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지출결정된 예비비 4억 2,1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정책실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은 국고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 사업부서는 '21년 11월, 예비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로부터 71억 9,600만원에 대해 사용 승인받았으나,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80.8%, 58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근거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예측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으며, 사업부서는 국비 내시액의 매칭분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 것이나

- 예비비가 지출결정되고 지출한 이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예비비는 실제 필요한 만큼만 지출 요청하고, 부족할 경우 다시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주택정책실의 **재개발임대주택 민사소송비**의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바,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보수적으로 추계될 필요가 있음

〈표 3-10〉 재개발임대주택 민사소송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1	재 개발 임대 주택 민 사 소 송 비	배 상 금 등	3,871	3,871	0 ^{주1)}	'21. 3.30	'21. 3.31
2	"	배 상 금 등			0 ^{주1)}	'21. 4.12	'21. 4.16
3	"	배 상 금 등	60	60	0 ^{주1)}	'21. 5.20	'21. 5.21

주1) 불용액의 경우에는 연번 순으로 ①990원, ②148,000원, ③310원임

- 아울러 동 예비비 지출건의 경우, 사업부서의 세출결산과 예산부서의 예비비 지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용액의 규모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가 지난 '19년부터 기준을 개정하여 집행잔액(불용액)에서 보조금반납금을 분리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는 전액 예비비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결산서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주거급여수급자지원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보조금반납금 (A)	불용액 (집행잔액, 지출잔액) (B)	계 (A + B)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세출결산 자료 ^{주1)}	941	439	1,380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주2)}	941	439	1,380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주3)}	-	1,380	1,380

주1)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서 Ⅲ-1」 p.749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주2)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서 Ⅲ-3」 p.3990 (16.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주3)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결산서 Ⅲ-1」 p.1302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사례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304억 3,200만원) 보다 △61.9%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예비비를 통한 소송 관련 비용은 188억 5,300만원(13건) 지출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예비비를 통해 소송과 관련된 비용 지출사례는 긴급히 발생하는 재해·재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어 소송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구와 지출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중 소송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일반예비비 지출액 ^{주1)} (A)	소송관련 예비비 지출액 (B)	비 율 (B / A)
' 2 1 회 계 연 도	86,767	18,853	21.7
' 2 0 회 계 연 도	106,696	30,432	28.5
' 1 9 회 계 연 도	161,349	97,228	60.3
' 1 8 회 계 연 도	30,125	23,870	79.2
' 1 7 회 계 연 도	4,313	3,692	85.6

※ 주1) 일반회계 예비비중 목적예비비 제외

- 예비비를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이 지출된 사례중 도시교통실의 **양재역 환승 주차장 사용료 반환**의 경우, 시설을 운영하던 기존 A업체의 양재역 환승주차장 무단 점유로 인해 신규 B업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었던 바,
 - 서울시와 A업체의 소송결과 서울시가 승소하여 A업체가 철수하였고, 신규 B업체가 운영하지 못한 기간 동안 서울시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16억 1,000만원을 반환하고자 8월 19일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양재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반환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예비비 사용승인일	예비비 지출일
1	양재역 환승주차장 사 용 료 반 환	기타반환금등	1,675	1,675	0 ^{주1)}	'21. 8.18	'21. 8.19

주1) 불용액은 44만 6,370원

- 다만, 소송에서 3월에 승소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었다면 '21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되고 '21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보다는 추경 등을 통해 경정하여 일반예산으로 지출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3-14〉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주1)}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주3)}
합	계 ^{주2)}	93,814	(100.0)	90,771	3,042	48
도	시 교 통 실	31,706	(33.8)	30,608	1,097	6
	복 지 정 책 실	24,448	(26.1)	24,448	-	2
	주 택 정 책 실	13,211	(14.1)	11,830	1,380	3
	물 순 환 안 전 국	6,975	(7.4)	6,968	7	2
	경 제 정 책 실	4,315	(4.6)	8,347	4	1
	소 방 재 난 본 부	2,746	(2.9)	5,764	12	6 ^{주4)}
	안 전 총 괄 실	2,378	(2.5)	2,377	0.3	3
	상 수 도 사 업 본 부	2,129	(2.3)	2,097	31	5
	평 생 교 육 국	1,528	(1.6)	1,528	0 ^{주5)}	2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1,248	(1.3)	1,248	0 ^{주5)}	4
	시 민 건 강 국	1,221	(1.3)	1,219	1	4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1,112	(1.2)	1,110	1	4
	문 화 본 부	328	(0.4)	328	-	2
	행 정 국	227	(0.2)	227	0 ^{주5)}	2
	재 무 국	140	(0.1)	140	-	1
	시 립 미 술 관	95	(0.1)	95	-	1

※ 주1) 지출결정액 규모순

주2)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에 따라 “계”와 “실본부국별 집행잔액”간 차이 있음

주3)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통계목 기준)

주4) 소방재난본부는 예비비로 7건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1건이 전액 불용되어 지출건은 6건임

주5) 집행잔액은 평생교육국 500원, 도시기반시설본부 2,000원, 행정국 80,000원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승인(2022. 6.17.)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3259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676억 9,300만원 중 938억 1,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07억 7,1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509억 4,600만원
- 지출결정액	897억 7,800만원
- 지출액	867억 6,7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0억 1,1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76억 9,300만원
- 지출결정액	23억 2,900만원
- 지출액	22억 9,7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20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90억 5,400만원
- 지출결정액	17억 700만원
- 지출액	17억 7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

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